

황원지방법원 진주지원

제 권 판 결

사 건 2005카공 172 공시최고
신청인 장육쾌 (300115-*****)
사천시 송포동 1076-5
판결선고 2006. 1. 2.

주 문

다음 목록 기재 증서의 무효를 선고한다.

이 유

다음 목록 기재 증서에 대하여 2005. 9. 21. 공시최고를 하였는바, 그 공시최고에서 정한 2006. 1. 2. 16:00까지 권리의 신고나 청구 및 증서를 제출한 자가 없으므로,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지 현

(증서의 중요한 취지)

- 1) 종 류: 약속어음 번 호: 8220659
금 액: 백지(W0) 발행지: 사천시
발행인: 광해공업 주식회사 지급지: 사천시
지급장소: 주식회사 우리은행 삼천포지점
최후소지인: 장육쾌
- 2) 종 류: 약속어음 번 호: 860380
금 액: 백지(W0) 발행지: 사천시
발행인: 광해공업 주식회사 지급지: 사천시
지급장소: 주식회사 우리은행 삼천포지점
최후소지인: 장육쾌
- 3) 종 류: 약속어음 번 호: 2824677
금 액: 백지(W0) 발행지: 사천시
발행인: 광해공업 주식회사 지급지: 사천시
지급장소: 주식회사 우리은행 삼천포지점
최후소지인: 장육쾌